

고 성 군 지 하 수 조 례 안

(의안번호 제1200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. 1. 4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10. 1. 4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10. 1. 13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정이유

「지하수법」, 「지하수법시행령」, 「지하수법시행규칙」,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·이용과 효율적인 보전·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(안제3조)
나. 취수량 제한, 지하수영향조사서, 지하수오염, 지하수정화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(안제5조~안제10조)
다.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제11조~안제19조)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9-681호(2009. 8. 19 ~ 2009. 9. 9)
- 의견 제출사항 : 없음

나. 관계법령

- 지하수법 제41조제1항,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1항, 제40조제3항,
지하수법시행규칙 제5조

다. 예산조치 : 없음

라. 합 의 : 없음

마. 규제심사 :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하수법 제41조 제1항,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40조 제3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기준,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, 과태료 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고성군의 지하수 개발·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·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그동안 주민공람·공고 과정에서 의견은 없었으나, 2007. 11. 7일 경남도가 시·군에 시달한 “시·군 지하수 관련 표준조례안 송부” 공문에 의하면, “2007. 10. 11일 건설교통부 주관 시도 관계자 회의 시 지하수법 제30조의 2 및 제30조의 3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지하수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독려한 바 있으며, 시·군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, 지하수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·군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” 하였음에도 본 조례 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
-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2009. 8. 19일부터 같은 해 9. 9일까지 마쳤는데도 2010. 1. 4일 조례안을 제출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10. 1.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